

일본 아동학대방지대책 강화에 관한 내용 및 논의

- 2007년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최진희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1. 서론

아동학대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일본에서는 특히 1990년 전후부터 새롭게 주목되기 시작했다. 저출산고령화사회가 되어 차세대 육성이 큰 국가전략이 되어가고 있는 일본은 아동을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아동학대문제 또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미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동을 잘 키워내는 것 또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아동들은 본래부터 자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힘약한 범죄나 위험한 도로교통 등 아동들을 둘러싼 환경은 악화되고 있어 아동들은 보호되어야만 한다.” “학교교사에 의한 폭력,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 본래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들이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에 당연히 사회가 아동들을 보호하는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아동들이 자라나는 환경은 안전만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학대라는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아동학대방지대책은 어느 나라나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 방지에 있어 2000년 국회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학대신고에 관한 법적, 제도적 준비를 논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학대 사례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권력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

한편 일본은 이미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방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아동학대방지 움직임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학대예방법 아니라 학대사례에 따른 심도 깊은 공권력 개입 등 그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동

1) 山縣文治, 「特集子どもを護る育む」, 『月刊福祉』, 2004.6.

해외제도 하이라이트

복지법 안에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킨 것과 달리 일본은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원입법으로 따로 두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조시켰고 학대상담 건수의 증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2000년)시켜 학대예방의 효과도 얻었으나 더불어 그 과제 또한 많았다. 예를 들면 친권제한의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학대하는 부모들에 대한 지도명령의 강화책 마련, 아동상담소와 관련 기관의 지원체제의 확충강화, 일반가족까지 포함된 아동양육지원책 강화²⁾가 보다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어왔다.

최근 일본은 최우선적으로 아동을 학대라는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히 구출해 내는 것과 공권력을 적절하게 개입시켜 강제라도 학대상황(학대가 의심되는 상황까지 포함)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철저히 아동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강력한 움직임을 꾀하고 있다. 이를 근거하는 2007년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 내용, 아동학대방지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아동상담소의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본 연구 목적으로 한다.

어느 나라 못지 않게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강한 친권의식, 가족중심적 문화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했고 대응정비 속도 또한 많이 늦었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상담체제 구축에는 노력하고 있지만 그 상황은

상담에 응하고 예방하려는 교육적 자원에 멈춰 있다.

한국은 아동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학대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 아동권리옹호를 위해 아동을 사회적 권한으로 구출·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이 전무하다. 현 우리나라의 부족한 아동학대 대책상황을 생각한다면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방지대책 강화에 관한 논의는 한국형 아동학대방지 강화책 마련을 위한 소재로서 제공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아동학대대응 현 상황과 그 움직임

1) 학대관련 상담 상황

전국 아동상담소에서 대응하는 아동학대 관련 상담처리건수는 수년간 급증하고 있다. 그 증가 경향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방지법의 영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2002년도에는 1999년도(상담건수 11,631건)의 약 2배에 달하는 2만4천건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질적으로도 심각한 케이스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그림 1).

2) 竹中哲夫 他, 『子ども虐待と援助－児童福祉施設・児童相談所のとりにくみ－』, 全国児童養護問題研究会編, ミネルヴァ書房, 2002.

2) 강제 입소조치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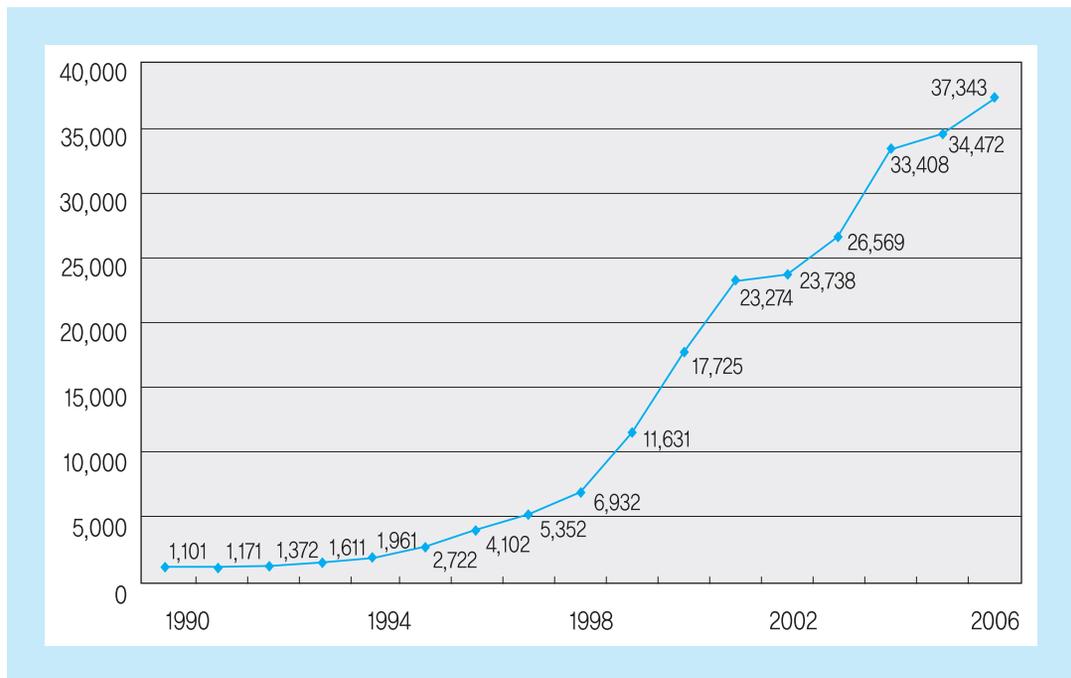
일본은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두드러지게 그 아동의 복지를 침해하고 있을 경우 친권에 대하여 부분적인 제약조치를 가할 수 있다.

강제적으로 수양부모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로 입소시킬 수 있지만 수양부모위탁 혹은 아동복지시설로 입소(아동복지법 제27조)시킬 것을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도도부현(都道府

県) 지사(知事)³⁾ 혹은 아동상담소장이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얻어 시설로 입소시킬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28조).

1999년도에는 강제입소조치를 신청한 전체 88건 중 44건이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얻었으나 2005년도에는 보다 늘어난 신청 176건 중 147건이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얻어 강제입소조치가 이루어졌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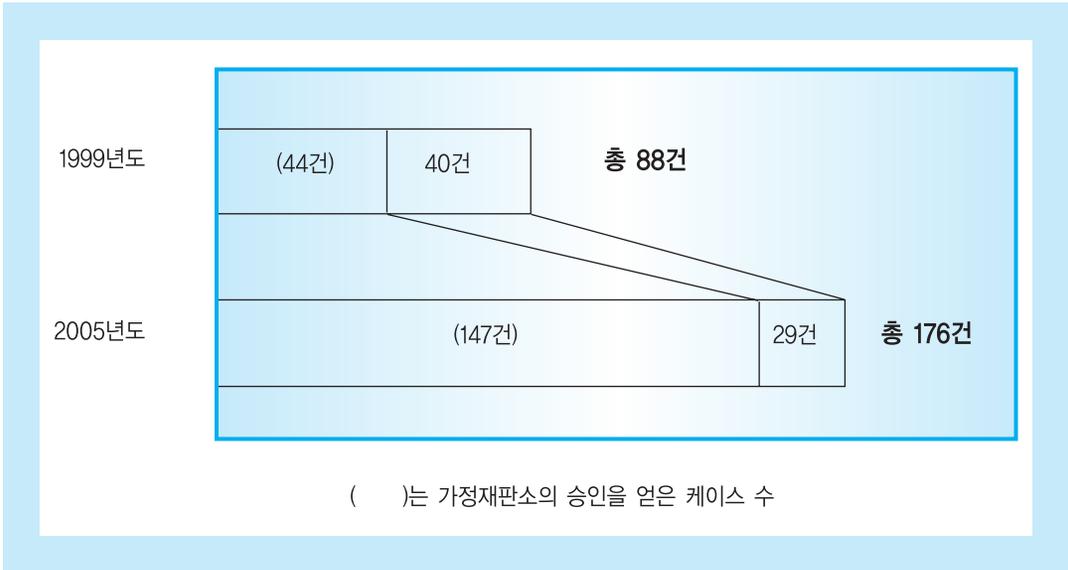
그림 1. 아동상담소에서 대응하는 아동학대상담 대응 건수 추이 (속보수치)



자료: 『아동상담소의 아동학대상담대응건수』 후생노동성 통계자료, 2007.

3) 지사(知事)란, 일본의 행정구역인 도도부현을 통괄하는 대표적인 장을 칭한다. 국가로부터 임위사무를 관리집행하는 특별한 지방공무원으로 주민으로부터 직접공선되며 임기는4년이다.

그림2. 강제입소조치 신청 건수 추이



자료: 『아동학대방지대책 현상』 후생노동성, 2007.

3) 아동학대 사망 사례 발생

아동학대방지법 시행 후에도 아동학대 사망 사례는 발생하고 있어 2000년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건수는 202건으로 나타났다⁴⁾. 사망 건수의 내역을 살펴보면, ‘관계기관이 학대 혹은 학대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동상담소와는 연결되지 않은 사례(30.7%)’와 ‘아동상담소가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사망사례(29.2%)’, ‘관계기관과의 접촉은 있었으나 가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여겨져 사망에 이른 사례(21.3%)’를 합치면 80%

를 넘게 된다(그림 3). 이것은 아동상담소 혹은 관련기관과 어떤 방식이든 연결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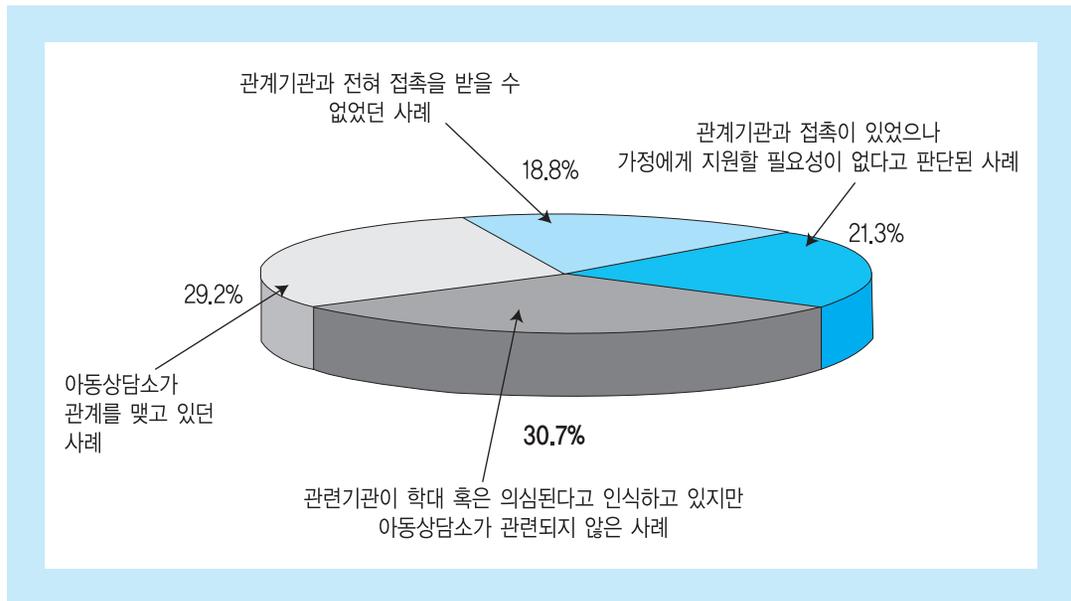
아동학대 사망사례에 관한 검증은 이미 2004년부터 사회보장심의회 아동부회에 설치된 아동학대등 요보호사례의 검증에 관한 전문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2005년4월에 1차보고, 2006년 3월에 2차보고가 있었다. 이들 보고서에서는 사망사례에서부터 나타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밝히고 있었으나 보고된 후에도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사례는 사라

4) 후생노동성자료, 『兒童虐待防止對策の現状』, 2007.

지지 않았다. 2007년 6월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 사례의 검증결과 등에 관한 보고(3차보고)”에 의하면, 발생예방을 위해서는 ①관계기관의 연계 ②임신출산기의 상담지원 ③정신장애나 산후 우울증 대응이 있고, 조기발견/조기대응을 위해

서는 ④안전확인과 리스크어세스먼트 ⑤자살미수 사례의 대응 ⑥부모자녀 분리 후의 대응 ⑦이 사하게 되는 케이스의 대응, 그 외 ⑧남겨지게 되는 형제자매에 대한 대응 등⁵⁾이 남겨진 과제로 지적되었다.

그림3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 사례발생



자료: 『아동학대방지대책 현상』, 후생노동성, 2007.

5) 후생노동성자료, 『兒童虐待による死亡事例等の検証結果等について』 社会保障審議會兒童部 兒童虐待等要保護事例の検証に關する専門委員會第3次報, 2007. 6.

4) 최근까지의 주요 아동학대방지 대책의 움직임

<p>1. 아동학대방지법 개정 (2004년4월 성립 같은해10월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수정(보호자 이외의 동거인에 의한 학대를 방지하는 것등도 대상)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개정 • 아동학대에 관련된 통보의무 범위 확대(아동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아동도 대상)
<p>2. 아동복지법 개정 (2004년11월 성립 2005년1월 이후 순차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상담에 관한 체제 충실(아동상담에 관한 시정촌을 법률상 명확히함) • 아동복지시설과 수양부모제도 등의 수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관한 사법권한 강화
<p>3. 아동·양육지원플랜 책정 (2004년12월 소자화사회대책회의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방지네트워크를 전국 시정촌에 설치 • 유아검신을 받지 않은 아동등 생후4개월까지 모든 유아의 상황파악을 전국 시정촌에서 실시
<p>4. 법률 개정에 입각한 각종 지침 등 책정과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촌 아동가정상담 원조지침(2005.2.14) • 아동상담소 운영지침 개정(2005.2.14) •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설치·운영지침(2005.2.25) • 아동학대대응 지침 개정(2005.3.25) • 아동자립지원계획 가이드라인(2005.4.1) • 아동학대등 요보호사례검증위원회 제1차보고(2005.4.28)
<p>5. 아동상담소의 아동복지사 배치기준 수정 (2005년4월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정해진 아동복지사 1명당 표준인구를 ‘약10만에서 13만’을 ‘약5만에서 8만’으로 개정

3. 2007년 아동학대 대응강화에 관련 내용

1) 아동학대방지등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방지법)개정 내용

2000년5월 위원입법에 의해 아동학대방지법

이 성립되고 같은 해 11월에 시행되어 아동복지법과 함께 아동학대방지과 대응에 관한 기본적 인 법률로서 그에 따른 적절한 운영이 요구되어 왔다. 아동학대방지법은 3년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을 되는데 2004년에 개정이 있었고 이번 2007년 개정이 두번째 개정이다. 2007년 아동학

대방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도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개정하게 된다. 2007년 5월 25일 아동학대방지법의 개정 내용은 내년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아동학대방지법의 부칙에 기본을 둔 것이다. 개정 포인트⁶⁾와 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법률 목적

법률 목적으로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의 촉진에 더하여 '아동의 권리의익 옹호에 공헌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로서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그 심신에 현저하게 중대한 피해를 받은 사례분석'이 추가되었다. 일본은 2004년부터 학대로 인해 죽음에 이른 사례 등 중대사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은 이것을 유념하여 규정한 것이며 동시에 새롭게 지방공공단체에게도 아동학대에 대해 움직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3) 안전확인 의무화

아동상담소 등이 아동학대에 관련하여 통보를 받았을 때에 '아동의 안전 확보에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을 '아동의 안전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로 보다 더 강한 대응을 촉진시켰다.

(4) 보호자에 대한 출두요구와 현장방문조사 권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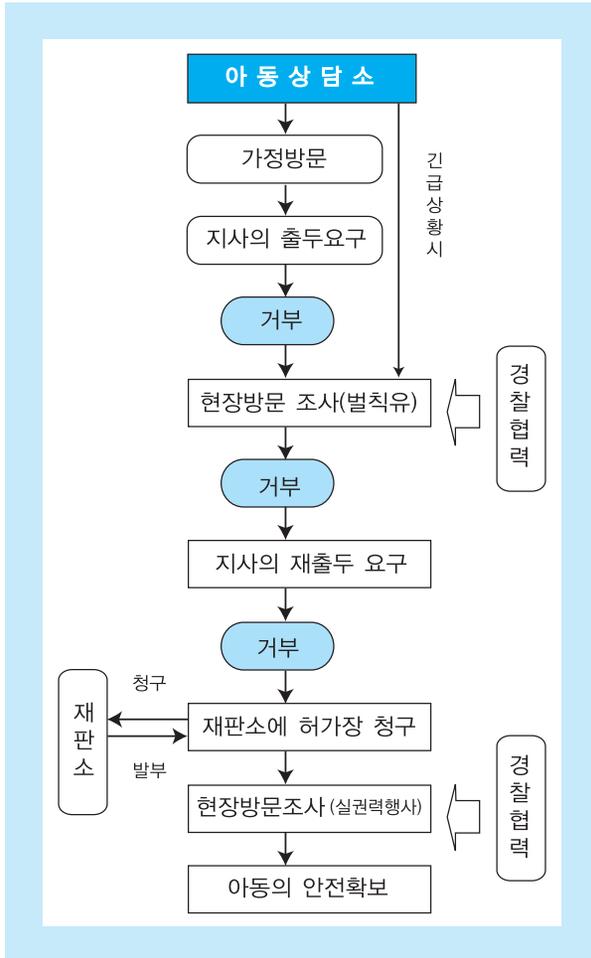
지사(知事)는 보호자에게 출두요구를 할 수 있는데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장방문조사등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재출두요구를 하고 보호자가 거듭하여 거부하는 경우 재판소의 허가장을 얻어 아동상담소의 직원 등이 거처하고 있는 곳을 현장방문검사하여 아동에 대해 수색 가능토록 되었다(그림 4). 아동상담소가 현장방문조사를 행하려고 해도 보호자가 자물쇠를 채우는 등 조사를 거부할 시 강제적으로 현장검사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은 현장검사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5) 보호자에 대한 지도권한 강화

학대를 가한 보호자에 대해 지도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일시보호, 강제입소조치,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필요에 따라서는 친권분실선언 청구가 가능해졌다.

6)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 2007.5.25.

그림 4. 아동의 안전확인 및 보호에 관한 흐름 (2007년 개정 포인트)



자료: しんぶん赤旗 2007.5.28일자 참고.

시설입소 등 조치를 해제할 시에 아동상담소는 보호자에게 지도효과, 학대 재발예방 효과 등

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었다. 보호자가 지도를 받는 것을 권장하는 동시에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꾀하는 것에 그 의도가 있다 하겠다.

(6) 보호된 아동에 대한 면회와 통신 제한과 접근금지 명령

강제입소조치뿐만 아니라 동의입소에 대해서도 면회와 통신의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표 1). 동시에 강제입소조치의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 접근금지명령을 지시하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하게 되었다.

2)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방지법과 동시에 개정된 내용⁷⁾으로 2008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의 포인트와 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단체의 기능 강화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⁸⁾에 설치에 대해서 지방공공단체는 '둘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7) 『児童福祉法一部改正』, 2007.5.25.

8)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란, 2004년 아동복지법개정에서 규정된 것이다.

지방공공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을 하며 동시에 요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 내용에 관한 협의한다(아동복지법제25조2항 관계).

표 1. 면회 및 통신 제한 강화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변경
일시보호 - 학대등으로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을 시 이루어지는 아동긴급보호	없음	면회, 통신 제한 - 접근금지명령이 필요한 경우 우 강제입소로 이행
동의보호 -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아동양호시설 등으로 입소조치, 수양부모위탁조치	없음	면회, 통신 제한 - 접근금지명령이 필요한 경우 우 강제입소로 이행
강제입소 등 - 보호자의 동의없이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지는 아동양호시설등으로 입소조치, 수양부모위탁조치	면회, 통신 제한	면회, 통신 제한 + 접근금지명령 (벌칙 있음)

자료: 『아동학대방지대책 현황』 후생노동성, 2007.

번 개정을 통해 ‘둘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보다 강한 설치를 요청하는 ‘노력의무화’ 규정으로 바뀌었다. 지방공공단체간 아동학대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이용가능토록 했다.

(2) 아동상담소장에 의한 친권대행

아동상담소장은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된 아동 등에 대해서는 친권을 행하는 자 혹은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의 기간동안 친권을 이행하는 자로서 정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이 자연인으로 되어 있기에 아동상담소가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개인으로서 행해져야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소장직을 물려나게 되면 아동에 대한 책임, 의무, 권한을 행하는 입장이 되지 않는 등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

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아동상담소 소장이 공직으로서 아동 등에 관한 친권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획기적이라 볼 수 있다.

(3) 벌칙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방문조사를 거부한 이(보호자)에게는 벌금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벌금을 인상된다.

3) 아동상담소 운영지침 개정 내용

2007년1월23일 아동상담소운영지침 등의 개정⁹⁾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동상담소에 의한 현장방문조사와 일시보호의 조치가 신속하며 정확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관계기관간의 연계강화를 꾀하여 아동의 안전확보를

9) 『児童相談所附設針等の改正について』雇発第0123002號, 2007.1. 23.

해외제도 하이라이트

최우선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방향이다. 그 내용의 포인트와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철저한 학대통보 접수

학대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학대통보로서 접수하고 기록(표)을 정지시켜 긴급접수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철저히 한다.

(2) 48시간이내의 안전확인 규칙 설정

2007년1월23일 아동상담소운영지침 개정내용 중, 학대상황에 놓인 아동의 안전확인작업 시간설정에 대해 '48시간이내가 바람직하다'라고 규정했다.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이 되기 전 이루어진 조사¹⁰⁾(2007.4.1)에서 피해학대아동에 관한 통보가 있을 시에 안전확인작업에 할애하는 시간설정에 대해 66지방자치단체 중 59지방자치체가 48시간으로 설정했고 그 중에서도 24시간이내로 설정한 곳도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48시간이내의 신속·정확한 대응'을 명시했다.

(3) 형제자매 사례 대응

아동기록표는 세대단위가 아닌 상담 접수한 아동별로 작성하고 특히 형제자매 사례의 경우 하이리스크 가정으로 인식하여 대응을 철저히 하여 학대의 징조가 보이는 경우에는 높은 위험도를 감안하여 일시보호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게 되었다.

(4) 모든 학대사례의 정기적인 사후점검

아동상담소가 담당하고 있는 학대사례의 가정 내 상황 변화 등(모든 케이스) 사후점검을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검토하게 되었다.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아동상담소는 관계기관(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시정촌)에 사례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했다. 아동상담소와 경찰서, 도도부현 아동복지담당 부국, 도도부현 경찰본부 각각에 대해 연계체제를 정비하고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여 대응하도록 했다.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의 조정기관이 모든 학대사례의 진행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실무자 회의 등의 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3개월에 한번정도) 상황확인, 주담당기관 확인, 원조방침 등에 대해 체크하는 구조를 도입하게 된다.

10) 『児童相談所における安全確保を行う際の時間ルールの設定状況について』, 2007.4.1.

4. 결론 및 논의

1) 아동학대방지대책 공권력 개입 강화

2007년 아동학대방지대책의 주된 방향은, 아동상담소와 시정촌(市町村)의 개입 권한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보호책을 행사하겠다는 점이다. 지사(아동상담소장 포함)의 권한을 강화시키며 보호자가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대응책까지 마련했다는 것이 큰 이번 개정의 특징이다.

아동학대방지법의 개정 포인트로 안전 확인의 의무화, 보호자에 대한 출두요구, 거처 현장 방문조사권한 강화, 보호자에 대한 지도권한 강화, 보호 구출된 아동과 보호자의 면회·통신제한과 접근금지명령의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상담소운영지침도 '안전성 확보'에 포인트를 둔 개정으로 아동의 안전확보 확인작업을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친권에 관련하여 아동상담소장의 권한을 강화시킴으로 친권대행까지도 가능케 한 것은 획기적인 개정내용이라 볼 수 있다.

일련의 아동학대관련 법 개정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위험한 사례들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공권력 개입이라는 부분을 최선의 대응책으로 활용하려함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개입, 보호를 위한 공권력 개입 강화의 움직임은 일본사회의 아동학대관련법제도가 그 동안 일본 가정문화 안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게 말해 준다.

2) 아동상담소의 개입강화에 따른 역할모순

미국에서는 아동상담, 학대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이 직권적으로 개입하면 해당 케이스는 재판소로 연결되어 재판소가 친권을 제한하고 감독한다. 그래서 부모의 개선을 위한 사법지시를 내리게 되고 이를 기초로 부모는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친권이 박탈되고 아동은 부모 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되어있어 부모는 노력할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일본 아동상담소는 초기개입, 보호만이 아니라 이후의 부모지도 및 상담지원, 부모자식의 재통합조정까지 아동상담소가 담당하게 된다.

특히 초기개입단계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보호자와 대립적 관계가 될 수 있어 이후 이루어져야할 원조관계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개입단계부터 마찰이 생겨 이후의 지원에 모순이 생기고 지원의 효과를 얻기 어렵게 된다면 이번 개정의 공권력 강화 개입이 오히려 부모의 태도 개선여지를 박탈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木村(키무라)는 정밀하고 수준 높은 상황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며 보호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질 높은 전문성과 지원활동이 요구됨¹¹⁾을 지적한다. 또한 津崎(쯔자키)는 강한 개입과 지원이라는 역할모순이 개입을 주저하게 하거나 이후 지원에 효과를 가지기 어렵게 된다면 실천현장에서는 이 모순을 극복

해외제도 하이라이트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인관계원조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입적 사회복지실천의 개발과 습득이 과제가 된다²⁾고 지적한다. 이렇듯 공권력 개입 여부에 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것이다.

3) 아동복지 전문성의 양·질 확보

법 개정에 따른 체제정비도 서둘러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선적인 문제는 아동복지사¹³⁾가 극단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일본의 아동복지사와 같은 영역의 영국의 소셜워커와 비교한다면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건수가 거의 5배에 가까운 오버웍 상태이다. 매일 접수되는 학대통보의 초기대응만으로도 역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일시 보호시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긴급피난할 장소도 없는 상태¹⁴⁾이며 아동양호시설로 학대아동이 입소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리적 케어, 가족재통합지원, 아동의 자립지원, 퇴소 후의 애프터케어까지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응 가능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직원의 증원(양적 확보)에 따른 전문성 강화(질적 확보)는 남겨

진 일본 아동학대대응 시스템의 과제라 하겠다.

Life(라이프)란 말의 의미는 ‘생명’, ‘생활’, ‘인생’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아동들을 학대라는 곳에서 구하는 생명차원의 대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동의 생활과 인생이라는 측면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007년 아동학대방지대책을 위한 강화책은 생명에 초점을 둔 방책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한국은 아동과 가정의 생명, 생활, 인생이라는 세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아동학대방지대책 시스템 설계가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은 아동학대관련 신고상답이 2006(8,903건)년에는 2000년(1,678건)¹⁵⁾의 5배가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일본 못지않은 아동학대문제가 우리사회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인 아동학대현황보고는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책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사후수습적인 대응의 아동학대방지대책이 아닌, 아동양육과 지원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양육 지원이라는 동선 상에서 바라보는 아동학대방지 정책을 우리현실에 맞게 분석, 검토해야 할 것이다.

11) 木村哲雄, 「児童養護施設の立場から」, 季刊『児童養護』全国児童養護施設協議会, Vol38(No.1), 2007.8.

12) 津崎哲朗, 「児童虐待対応の變遷と課題-児童相談所を中心に」, 『子どもの虹情報研修センター』紀要 No.2, 2004.

13) 일본의 아동복지사는 사회복지사와 차이가 있다. 아동상담소의 중심적인 직원이다.

아동복지사는 아동상담소장의 명을 받아 아동의 보호 그외의 아동복지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전문적 기술로 필요한 지도를 행하는 등 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해야한다(아동복지법제13조관련).

14) 才村純 他, 「児童虐待防止制度改正後の運営實態の把握-課題整備及び制度のあり方に關する調査研究」『平成18年度児童関連サービス調査研究等事業報告書』財團法人こども未來財團, 2007.

15) 한국아동학대문제연구소, 아동학대현황자료.

■■■ 참고문헌

山縣文治, 「特集子どもを護る育む」, 『月刊福祉』, 2004.6

竹中哲夫 他, 『子ども虐待と援助ー児童福祉施設・児童相談所のとりくみー』, 全国児童養護問題研究会編, ミネルヴァ書房, 2002

후생노동성통계자료, 『児童相談所における児童虐待相談件数(速報値)』, 2007

후생노동성자료, 『児童虐待防止対策の現状』, 2007

후생노동성자료, 『児童虐待による死亡事例等の検証結果等について』 社会保障審議會児童部 児童虐待等要保護事例の検証に?する専門委員會第3次報, 2007.6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 2007.5.25

しんぶん赤旗 2007.5.28

후생노동성자료, 『面會・通信制限の強化等について』, 2007

『児童福祉法一部改正』, 2007.5.25

『児童相談所指針等の改正について』 雇兒發第0123002號, 2007.1.23

『児童相談所における安全確保を行う際の時間ルールの設定状況について』, 2007.4.1

木村哲雄, 「児童養護施設の立場から」, 季刊『児童養護』 全国児童養護施設協議會, Vol38(No.1), 2007.8

津崎哲朗, 「児童虐待對應の變遷と課題ー児童相

談所を中心に」, 『子どもの虹情報研修センター』 紀要 No.2, 2004

才村純 他, 「児童虐待防止制度改正後の運營失態の把握・課題整備及び制度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 『平成18年度児童関連サービス調査研究等事業報告書』 財團法人子ども未來財團, 2007

한국아동학대문제연구소, 아동학대현황자료 GSST